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5 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 : 이병훈·송갑석·신영대

주철현 · 김승원 · 도종환

양정숙ㆍ이상헌ㆍ박 정

윤관석 · 황운하 · 남인순

이원택・야전(비)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"향유"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"누림"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 이려는 것임. 법률 제 호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향유"를 "누림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	제9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
원 등) ① (생 략)	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	②
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	
주민의 문화예술 <u>향유</u> 기회를	<u>누림</u>
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	
로 시행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